

행정자치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○○○○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훈계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○○○

② 부산광역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추진단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) ○○○은 2015. 8. 3.부터 2016. 8. 2.까지 실무담당자로 도시재생업무와 관련하여 ○○도로 ○○버스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.

그리고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2. 2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추진단)에서 관광벨트조성업무와 관련하여 ○○○○버스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.

‘○○도로 ○○버스’는 지역관광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도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노하우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투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신규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고, ‘○○○ ○○버스’는 접근성이 어려운 ○부산권 및 ○○강 일대 신규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

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다.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운행노선, 운행차종, 운행대수, 운행방법, 서비스의 수준, 면허기간, 운임, 보조금의 지급 등을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선정시 노선 등을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, 자본금, 운송사업 경험 및 서비스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「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고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1. ○○도로 ○○버스 관련

위 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5. 11. 25. ‘○○도로 ○○버스 민간사업운영자 선정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기준⁵⁾을 명시하여 민간사업운영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, 최종 3개 사업자⁶⁾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그러나 주식회사 ○○버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당초 공고기준과 다르게 1차로 4대를 운행하고 1차년도 운행 후 실적분석 등을 검토한 후에 순차적으로

5) 부산광역시 공고문에 표시된 등록기준 : 운행버스 및 운행대수(25인승버스 최소 8대 이상)

6) 1. ○○버스 컨소시엄(10대), 2. 주식회사 ○○버스(4대, 1차년도 운행 후 실적분석 등을 검토 후 순차적으로 4대 추가 도입), 3. 주식회사 ○○○○(8대)

4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.

따라서 위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‘○○도로 ○○버스’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주식회사 ○○버스를 공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자체 판단한 후 주식회사 ○○버스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2016. 2. 16. 최종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회사 ○○버스를 ‘○○도로 ○○버스’ 신규노선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였다.

2. ○○강 ○○버스 관련

위 관서(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추진단))에서는 2016. 2. 15. ‘○○강 ○○버스 민간사업운영자 선정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등록기준⁷⁾을 명시하여 민간사업운영자 선정 공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1개 사업자⁸⁾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그러나 주식회사 ○○버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당초 공고기준과 다르게 1차로 3대를 운행하고 1차 운행실적 분석 후 2차분을 추가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.

따라서 위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‘○○강 ○○버스’ 신규노선 운영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추진단)에서는 주식회사 ○○버스를 공고

7) 부산광역시 공고문에 표시된 등록기준 : 운행버스 및 운행대수(25인승버스 5대 이상)

8) 주식회사 ○○버스(1차 3대, 운행실적 분석 후 2차분 추가 운행)

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자체 판단한 후 2016. 3. 23.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회사 ○○버스를 ‘○○강 ○○버스’ 신규노선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한정면허 사업자선정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